對 外 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2015. 7. 기획조정실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VIP의 몫 ⇨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

● 현 정국의 무게중심 BH로 완전 쏠려 있는 상황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 사퇴 등 최근 정치 현안에서 BH 압승
- 여당, 법무부·검찰 모두 중요 국가 정책에서 BH의 눈치 보며 주도적으로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음

●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BH의 영향력 발휘 절실

- 특히, BH의 입김은 법무부·검찰 및 그 종속 변수인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을 움직이는 직접적·결정적 동인이 될 것

▣ **하지만 BH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 없음**

●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 영향에 따른 부정적 분위기 고착되어 있고, VIP 핵심 보좌진의 親검찰 구성의 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 BH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설득 방안 검토하고 있으나, 상고법원 및 사법부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 우려 불식에 성공하기 전에는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BH 설득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시점 ⇨ BH 설득의 최종 골든 타임 임박**

● ①7월 임시국회까지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 불발, ②8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심사 일정 확보 불투명 ⇨ 9월 이후 국회를 타깃으로 삼아야 함

☑ 9월 이후 국회 예상 일정

▶[전체 일정] ①정기회: 9/1 ~ 12/9 (국회법 제4조, 5조의2 제2항 2호에 의해 9/1부터 100일간) ②임시회: 12/10 ~ 12/31

▶[국정감사] 9. 4. ~ 9. 23.

▶[법률안 심사]

- 국정감사 종료 후 정기회 종료시까지 1개월 남짓 + 12월 임시회에서 실시 예상
- 2015년 법률안 예상 일정 ⇨ ①[1차] 10월 초중순 ~ 11월 중순(11월 중순 이후는 예산심의에 관심 집중), ②[2차] 12/10 이후 연말까지 임시회 회기
- 총 3~4회 법사위 1소위 개의 예상

☞ 상고법원 법률안 [1차] 법률안 심사 시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9월 정기국회 개의 이전에, BH 설득 완료하여 우호적 입법 환경 조성하고 그 긍정적 분위기가 법사위까지 전이되도록 해야 함

▣ BH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 필요 ⇨ 적극적 협상·설득 카드 제시

● 정부와 사법부의 협력 관계 노정의 과거와 미래상 제시 ⇨ 국가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공고한 유대관계 구축의 필요성 강조

- ①정부 운영에 사법부가 기여해 온 구체적 판결례 언급, ②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조 약속, ③사법운영에 대한 우려 해소

● 상고법원에 대한 BH의 긍정적 인식 형성 도모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고제도 개선의 절박성 어필
- 현재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BH의 오해 해소 및 최대 관심 포인트 포착 ⇨ BH 설득이 가능한 수정안 제시

● 아울러, BH 최대 역점과제인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사진 제안

- ⇨ ①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한 공감, ②상고법원 수정안 및 新정책에 대한 호감과 관심 유발을 전기로, BH를 상고법원 도입의 우군 세력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전략 모색

II. BH 현황 분석

1. 대외 현황

▣ **집권 1~2년차 ⇨ 가시적인 성과·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하였음**

- 집권 1년차의 인사 난맥상, 집권 2년차의 세월호 사고, 비선 실세 논란 등 ⇨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 **집권 3년차 ⇨ 불안감·절박감 속에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골든 타임' 선언**

- 올해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에 해당함
  - 전국 단위 선거가 없음 ⇨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정치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
  - 내년부터는 집권 4년차로서 레임덕 시작 ⇨ 올해 초 비선 실세 논란 등으로 인하여 조기 레임덕 가능성마저 제기된 바 있음
- 뚜렷한 '집권 3년차 아젠다' 발굴·제시하기 위해 고심의 노력 ⇨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司正 아이템 채택
  - 3월경 이완구 전 총리를 앞세워 '부정부패와 전면전' 선언하며 제1차 사정 정국 조성 ⇨ But,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로 역풍 직면, 오히려 이완구 전 총리가 국무총리직에서 낙마하고 불구속 기소됨
  - 후임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 임명하며, 사정 2라운드 착수 분위기 조성
    - ①유사 이래 최초로 현직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 ②행정부 2인자

로 공안통 검사 출신 기용 ⇨ 강력한 사정 · 공안 드라이브 메시지 표방

▣ 두 가지 화두 ⇨ '경제'와 '통일'

● [경제] ⇨ 각종 정치 이슈를 잠재우고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 준비를 위한 목적

- 이른바 '경제위기론' ⇨ 개헌론 등 소모적인 정쟁 요소를 압살하는 한편, 레임덕의 시작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
- 또한 역대 정권의 성패는 임기 말의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판가름되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경제 발전 이룩하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표방
  - 특히 최근 들어, 여권 내 당정청 '삼각편대' 총동원해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올인하는 분위기 ⇨ 여당 내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구성하여 '액션플랜' 구체화에 착수, 가동 멈춘 노사정위원회 부활 추진
  - 여권 내에서는 2015년 전반기 슬로건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라면, 하반기는 "노동 개혁" 이라고 주장

☑ VIP, 7. 21. 국무회의 발언
"노동 개혁은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 [통일] ⇨ 총선·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 목적

- 內治에서의 실책을, 다소 추상적이고 이벤트 성격이 강한 外治, 특히 통일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목적
- 특히 '통일대박론' 이라는 프레임 선점은 진보층 공략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북한 지도층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 긴장감 조성을 통한 보수층 결집에도 상당히 유효한 다목적 카드임

2. BH · 여권 내부 현황

▣ BH의 압도적 주도권 확보

- 여야 합의 산물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VIP의 거부권** 행사,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등 **강공 전략 구사**
  - **김무성 · 유승민 투톱 체제 출범 후**, BH 영향력 벗어난 **여당의 독자 행보에 대한 위기의식 발로**
  - VIP 집권 하반기 성공적 정국 운영을 위해, 내홍 감수하고라도 **여당에 대한 친정 체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특히,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을 둘러싼 **역학 관계**에서 밀릴 수 없다는 **친박계의 현실적 셈법**도 막후에서 작용
- 결과적으로, **BH 의사 모두 관철됨** ⇨ 당분간 **VIP가 여권의 구심점**으로 **막강한 영향력 발휘** 예상

▣ 당청 관계 복원 노력 ⇨ 포스트 유승민 정국 설계에 주력

- 유승민 원내대표 사임 2일 만에, 장기 공석이던 **정무수석에 현기환 前 의원 임명** ⇨ 소통 단절 상태인 **당청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신호탄**

> ☑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
>
>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회협력 본부장 등 지낸 노동계 출신 정치인
>
> ▶**VIP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 ⇨ 내년 총선에서 **여당 공천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
>
> ▶정통 친박계이지만, **비박계와도 두루 친분**이 두텁다는 평
>
> ▶김무성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 ⇨ 김 대표에 대한 배려 내포

- 유승민 사태 국면에서 무난하게 중재력과 정치력 발휘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신뢰 재확인** ⇨ 김무성 체재에 최대한 협조하며 하반기 정국 이끌어가겠다는 포석
- 합의추대 방식으로 **신임 원내대표에 원유철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정훈 의원** 선출

> ☑ **[인선 배경, 성향 등]**
>
> ① 원유철, 김정훈 의원 모두 **비박계**이지만, **계파색 옅고 친박계와도 관계 무난**

② **원만한 성격**에 당내 **교분의 폭 넓어, 위기 수습용 인선**으로 최적
③ 계파 초월한 **탕평 인사 외관 창출**하면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로 격상시켜 **정책 일관성도 달성**

- 다만,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BH가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

- **여당 내 실무급 인사**에서는 **친박계 쏠림 현상** 발생

  - **①원내수석부대표** ⇨ 친박계 핵심 **조원진** 의원, ②공천 책임지는 **사무총장** ⇨ 친박계 **황진하** 의원

● **7. 16. VIP와 여당 지도부간 청와대 회동**으로, 파열음 냈던 당청관계 복원에 착수 ⇨ 향후 **당정청 회의 월 1회 정례화 추진**

▣ BH 내부에서는 민정수석 등 강경파 득세

● 당청관계 **'근본주의자'들**이 VIP 주변에서 **지근거리 보필**

- 여론 살피고, 대화 · 타협 중시하는 **온건파 입지 축소**

☑ **이병기 비서실장 소외론 대두**
▶'문고리 권력 3인방' 포함, **강경파 수석들과 불화**
▶당청 긴장 국면에서 중재역할 제대로 못해, **VIP와 심리적 거리 멀어져**
▶**홍보 및 민정 업무**는 이미 **수석들에게 업무 포괄 위임**한 상태
▶최근 지인들에게 **"비서실장 자리를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 토로**한다는 소문

- 대신, VIP 심기만 살피고 충성 강조하는 **강경파들 활동 반경 확대**

☑ **우병우 민정수석의 입지 강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2의 사정 정국 조성에 **막후 영향력 행사**
▶우 수석이 **비서실장보다 더 자주 VIP 독대**한다는 소문
▶다만, 법조 현안 관련하여 **이명재 민정특보와의 관계**에서는, 법조 경력이나 연령 등의 한계로 **일방적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상황**

3. 사법부에 대한 인식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와 우려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인] 최종심 법관에 대한 VIP의 임명권 침해 + 정부 배제한

독단적 추진

- 대법관 전원을 VIP가 임명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역시 최종심 법관인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의 인사권 행사 가능성에 주목**
- 그러나 **현재의 법률안**에는 VIP에 대한 **인사권 배려 없음** ⇨ 상고법원 도입을 최고법원 구성에 대한 VIP 관여에서 벗어나 **사법부가 영향력 확대하려는 시도**로 파악
-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여 소송 심급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중대 현안 관련하여, **BH, 법무부와 사전 조율 없이** 국회의원 설득을 통해 **법률안 발의한 경과에 대해서도 반감** 있음

▣ **사법부가 국정 운영 추진에 걸림돌 된다는 인식 상존**

- 기본적으로 사법권 독립 존중 의식보다, 정치적 시각에서 **사법부가 BH 정국 운영에 협조적인지에 강한 관심**
  - **전임 비서실장, 민정수석의 검찰중심적 사고, 反법원 정서**가 상당한 **영향** 미침
- 정치적 쟁점 내포된 사건 등에서 **여권에 불리한 재판으로 정국 운영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불만** 有
  - 예컨대,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자원외교 수사 관련 **김○○ 前 금감원 부원장보, 정○○ 前 포스코 부회장 영장 기각** 등
-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 필요**하다는 **인식 팽배**
  - 사법부에 쉽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상고법원 등 주요 현안을 매개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방안을 줄곧 모색**

III. BH 설득의 구체적 방안

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

가. 판결을 통한 과거 왜곡의 광정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1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❶과거사 정립, ❷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2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아래 **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❹노동, ❺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❶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❷자유민주주의 수호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

● **이석기 전 의원 사건**

-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걺

>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한편, 첨예한 갈등·대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당한 결론이라도 이를 도출하는 **과정·절차가 소홀하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대법원은 **공개변론 중계방송** 등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하였음

- **통상임금 사건**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이 **최소한의 혼란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임

>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 **키코 사건**

  - 금융기관과 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역시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인 노력을 통하여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 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❹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4대 부문 개혁 중 <u>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u>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 <u>KTX 승무원 사건</u>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u>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u>**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u>정리해고 사건</u>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u>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u>**

▶악기 제조업체인 **<u>콜텍</u>**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u>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u>**

▶**<u>쌍용차</u>**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 <u>철도노조 파업 사건</u>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u>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u>**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u>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u>**

▣ ❺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나. 정부 장관급 인사 추천 협력

▣ 현 정부 아래에서, 여러 고위 법관이 정부 장관급 인사로 임명

> ▶이○○ 前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
> ▶황○○ 前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감사원장
>
> ▶최○○ 前 서울고법 부장판사 ⇨ 방송통신위원장
>
> ▶이○○ 現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 법관의 행정부 관료 진출에 대한 사법권 독립 저해, 삼권분립 원칙 침해 등 우려 섞인 시각에도 불구 ⇨ 유능한 법관들이 **VIP의 국정운영에 참여**하여 역량 발휘하는 것도 전체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에서 **장관급 인선에 최대한 협조**

2.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도모

가. 상고법원 설득의 기본 방향 ⇨ BH의 고착된 인식을 변경할 수 있는 특단의 전기 마련

▣ **현재 BH 내부에서는 상고법원에 대한 일응의 정책 결정 완성**

▣ **BH가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명분과 계기가 제공되어야 함**

● ①BH 설득 노력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여론戰으로 지속적 이슈화 추진 ⇨ **BH 관심 사항으로 포착**되게 하는 사전 **정지 작업** 필요

⁝ 법리 논쟁보다는 **상고법원 도입의 장점과 기대효과,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층화 · 다각화된 경로로 **드러나도록** 함

⁝ 상고법원에 대한 비판론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개진 등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도 **이슈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음

● ②사법부의 진정한 힘은 **판사들의 단단한 결속력**에 있음 ⇨ 내부의 **하나된 여론**을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여 설득의 **추동력**으로 활용

● ③상고법원 도입을 사법부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①국민의 사법복지 증진을 위한 개혁, ②국가의 발전된 미래상을 구축해 나가는 개혁으로 표방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의 완성**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부각

나. 상고법원 도입의 시급성 및 정당성 강조

1) 대법관의 업무 과부화 현실 제시

▣ **대법원 사건 접수, 처리 등 통계 자료**

연도	접수	처리	대법관 1인당 접수건수[1]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전원합의체	심리불속행
2002년	18,600건	18,717건	1,550건	1,559건	10건	46.2%
2010년	36,418건	35,168건	3,035건	2,931건	11건	68.8%
2011년	37,266건	35,922건	3,106건	2,994건	17건	69%
2012년	35,776건	36,233건	2,981건	3,019건	28건	55%
2013년	35,110건	35,115건	2,926건	2,926건	22건	54%
2014년	37,651건	38,141건	3,138건	3,178건		

-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여 년간 대법원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약 18,000건에서 38,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2015년에는 4만건 돌파** 예상

- 2014년 기준 총 37,651건,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연간 3,178건, **매월 265건**, 주말 없이 **하루 평균 8건 처리 要** (⇔ 대법원 전체 기준 미국 연간 75~80건, 영국 60~80건, 독일 900건)

- 심리불속행률은 10년 전과 유사, 전원합의체 사건은 10년 간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도 증가

▣ 여러 부작용 현실화되고 있음

- **50대 후반, 60대의 대법관**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과로에 시달리며 1년 내내 폭증하는 **재판업무에 매진** ⇨ 매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 부족

- 물리적 한계에 근접한 사건 폭증은, 궁극적으로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

- **100명 이상의 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대법관 보좌** ⇨ 전 심급에 걸친 효율적인 사법부 인적 자원 활용에도 한계

- 대법관 후보 기피 현상 심화 ⇨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적 요청

1)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제외

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

☑ 2015. 7. 20.자 법률신문 "경륜갖춘 법조인, 대법관 후보 추천에는 '손사래' "

한 전직 대법관은 (중략) **"환갑 언저리의 나이에 버텨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변호사 특히 학계나 검찰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라며 "대법원이 연간 처리하는 수를 대폭 줄여야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도 충실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실무에 익숙한 법관들이 사건 처리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상고법원 설립 등을 통해 상고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대법관 다양화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 대법관 증원론의 문제점 지적

▣ 대법관 증원론 주장 세력의 의도 간파 필요

● [민변의 腹心] ⇨ 진보 인사 대법관 진출

- 대법관 증원으로, 진보 성향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 교두보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김○○ 변호사 (前 민변 회장,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주장

"기본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입장에서 20명안을 제시한 것은 전혀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20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한 것이다. 우선, 한 개의 부를 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해서 6개의 부를 두게 되면 어느 정도 전문부를 구성할 수 있다. 민사부 2개, 형사부 2개, 행정부, **노동부** 등으로 전문부화 할 수 있고, **적어도 각 부 3명의 대법관 중 1명 이상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용하게 되면 다양성도 갖출 수가 있다."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2008), 363면]

- 민변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변함 없는 기조로 유지되고 있음
- **상고제도 개선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자칫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된다면, 진보 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한 **대안으로 주장**하며 **최고법원 입성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우려 매우 높음

● [대한변협의 의도] ⇨ 자기 **밥그릇 지키기**

- **대한변협**은 상고심의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대법원의 심판 범위**를 **제한**하자는 각종 제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음

-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이 많을수록 변호사들의 경제적 이익은 커짐 ⇨ 변호사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고법원 반대 ⇨ 대법관 증원을 통하여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수 증대 ⇨ 국민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에는 관심 없고, **변호사들의 실리 확보에만 몰두**

▣ 대법관 증원론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

● **대법관 증원**은 심각한 수준의 상고사건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함

- 수명의 대법관 증원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고사건 접수 추세라면, 약간의 시간 경과 후 다시 제도 개선 목소리 대두될 것

● 미국, 영국 등 **주요 사법선진국가**에서 최고법원 구성을 One Bench 구성이 가능한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가벼이 볼 수 없음

- **15명 이상으로 최고법원을 구성**할 경우, 충실한 토론과 평결을 통한 **분쟁 해결 및 규범 형성 기능 수행 불가능**

- 예컨대, 대법관이 170명에 이르는 러시아 대법원의 경우, 평의가 아닌 투표에 의해 판결한다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

다. 상고법원안에 대한 우려 해소 ⇨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재설계

1) 기본 전제

▣ 1BH의 기본적 인식에 동의하는 스탠스를 취함

● 헌법이 **대법관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BH 내에서 득세

>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공식 발언**
>
> "VIP에게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지명권**을 달라, 그러면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

●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VIP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상고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존중**할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3항의 해석상 CJ에게 임명권이 있는 현실과의 균형점을 모색

▣ ②BH 설득을 위한 특단의 카드 제시할 필요

- 입법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BH와의 협상 창구가 자주 마련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한 양보 불가피함
- 내부적으로는 CJ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CJ가 파격적으로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2) 기존의 사법부 내부 검토 방안

▣ 개요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에 국회 및 대통령이 선출 및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 ⇨ 국회 2명, 대통령 1~2명, 사법부 현직 법관은 최소화

▣ 한계

- ① BH 입장에서 반대할 가능성 높음
  - 9~10명의 추천위원 중 1~2명의 지명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 ② 국회 몫의 추천위원이 포함될 경우 여야간 정치적 타협에 따라 후보자 나눠먹기 식의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
- ③ 국회에 대하여 대법관의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추천위 참여권을 인정하게 됨 ⇨ 대법관의 경우와 균형에도 맞지 아니함
  - 헌법은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대하여도 국회의 추천권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3) BH의 반감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임명절차 제시

▣ [개요] 당연직 3인 외 6인 ⇨ CJ와 대통령이 각 3인씩 지명

	대법관후보추천위	기존 검토안	새로운 제시안
당연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선임대법관	상고법원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비당연직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대통령 지명 1명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2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2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종합	행정 1명, 사법 3명, 재야 1명, 교수 2명 일반 3명	**입법, 행정, 사법 각 2명** 재야 1명, 일반 2명	**행정 4명,** 재야 1명, **사법 1명,** 일반 3명
우호표	10명 중 6명으로 과반 확보 (사법 3+일반 3)	**9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2+일반 2)**	**9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1+일반 3)**

▣ 1 CJ의 인사권 대폭 양보

● '(대법원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권 행사'한다는 것은 대외적 상징성과 설득력이 가장 큰 요소임

☑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추천위원회와의 비교 ⇨ **대법원이 파격적으로 양보한 것으로서 진정성 있는 권한 양보임을 부각시킬 필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9명의 위원 중 법무부 우호세력 5명**(검찰측 인사 2 +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비변호사 일반위원 3)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7명의 위원 중 국회 우호세력 4명**(나머지 3명은 법조3륜 대표)

● CJ의 사심없는 인사권 양보'로 설득 가능성 높아질 것

▣ 2 반면, 대통령의 관여 정도 획기적 강화 ⇨ BH 설득에 유리

● 대통령 지명 위원이 추천위 논의를 주도하게 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부여한 것과 유사한 효과 발생

- BH입장에서도 헌법상 CJ에게 임명권한이 있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을 얻었다고 받아들일 것
- 피추천자들 중 실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BH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추가적인 전략적 스탠스도 가능**

▣ **3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인선 기능 발휘**

-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상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로 한정** ⇨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임명대상자를 검증·선정하는 인사심의 기구**

  [유사 사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검 감찰부장 등

- 임명대상자 **추천 배수는 2배수 또는 3배수**로 설정

☑ **한편, 국회의 권한 보장 모색 ⇨ 약식청문회에 준하는 인사검증권한 부여**

▶가칭 **'국회 인사검증위원회 심사제도' 도입**

▶법사위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원칙적 서면심사방식에 의한 인사검증 실시**

▶인사검증심사경과보고서에 **사실상 기속력** 인정

라. 상고법원안에 대한 우려 해소 ⇨ 중요 관심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

▣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중요 정책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하게 됨**

- 상고법원 제도는 상당수의 상고사건을 상고법원에 떠넘겨 대법원의 업무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님 ⇨ 오히려,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확립**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규범형성 기능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분류 절차를 통해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정해질 것

  올해 초 대법원규칙 개정하여 상고사건에서의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Amicus Curiae) 도입** ⇨ **정부**가 **사건 분류 단계**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을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정해 달라는 공식적 의견 개진 가능**

- 그에 따라, 상고법원은 개인적 권리관계 확정에 적합한 사건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운영

● 현재 법률안에도 **여러 중요 사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탄력적 확대 가능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 수렴하여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음

- 예컨대, **①공선법 위반 사건** 전체, **②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③형사합의사건** 전체, **④피고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행정사건** 등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

● 그 외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 피력하면 이를 반영한 수정한 제시 가능

마. 상고법원안에 대한 오해 불식 ⇨ 입법 추진 절차 해명

▣ 시기적 불가피성으로 인해 '의원입법' 형식 선택

● 종래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의 **처리 지연** 또는 **기피 현상 존재**

- 대법원이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한 후 **국회에 발의**되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이 소요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였음

☑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처리지연하거나 기피한 사례

▶ **행정소송법 개정안**

- 2011. 11. 법무부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 구성 ⇨ **대법원도 참여**
- 2013. 3. 법무부와 대법원 사이의 합의안 도출하여 입법예고
  ⇨ 정부(법무부)는 아직까지 **법률안 미제출**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 절차조정법 제정안**

- 2008. 1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제정안 송부
- 법무부 ⇨ 법률 내용 복잡하다는 이유로 검토 지연하다 결국 **법률안 미제출**

▶ **상업등기법**

- 2002. 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6. 3.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4년 2개월 소요)**

▶ **비송사건절차법**

- 2002. 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6. 3.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4년 2개월 소요)**

▶ **사법보좌관법**

- 1999. 2.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4. 9.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5년 7개월 소요)**

●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 개입**으로 **내용 변경**되는 사례도 존재

☑ **법무부가 법률안의 핵심적 내용을 변경한 사례**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민법상 호주제가 2008. 1. 1.부터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했던 상황
- **대법원**은 **2005. 8. 2.**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
- **법무부**는 대법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변경(사무관장기관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변경)**하여 **2006. 3. 3.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
- 대법원은 어쩔 수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국회 논의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사무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함) 제시되어 2007. 4. 27. 국회 통과
- 법무부의 개입으로 인한 법률안 핵심 내용 변경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한 시점(2005. 8. 2.)부터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2007. 4. 27.)되기까지 **약 1년 9개월 소요**

● **상고법원 도입의 시급성 막중**하여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피**하였고, 이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 ⇨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

⁝ 대법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상고법원 법률안 준비** ⇨ 19대 국회 임기 만료(2016. 4.) 전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만 남아 있었던 상황**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입장임

▣ **상고법원 설치는 법원 업무와 직결되는 정책 ⇨ 법률안 발의 형식에 관한 사법부의 재량권 인정될 여지 충분**

●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무부 소관 업무(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관련성이 적은 **법원조직**이나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안 ⇨ **정부입법** 대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입법한 **선례** 존재

☑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과정
▶ 1993. 11.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설치
▶ 1994. 2.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대법원에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건의
▶ 1994. 4. 대법원 ⇨ 국회에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 입법건의
▶ 1994. 7. 법사위원장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출
▶ 1994. 7.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원회**의 경우도, 소관 법률을 대부분 **정부 제출**이 아닌 **상임위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으로 처리

-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은 총 59회 제출되었으나, 정부 제출은 단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사위원장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소관 법률인 **공직선거법** 등을 법무부 또는 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회에 제출하여 처리(위원장 발의)**하고 있음

3. BH의 중점 추진 정책 아이템 제시

가. 기본 전제

▣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상고법원안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함**

●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제공

▣ **BH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이면서 사법부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

● 관심 유도 ⇨ 최대 현안인 경제 관련 아이템이 적당함

☑ 경제와 사법의 관계

▶한 국가의 **법치주의 실현과 GDP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있음 ⇨ **이코노미스트誌**에 실린 우측 그래프는 이를 나타내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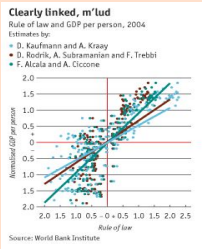

▶**2007년도 KDI 보고서** ⇨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순위의 법질서**만 확보되어도 **GDP가 1% 추가 성장**한다'라는 분석

▶**세계은행 발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 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 부문이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대한민국 사법부 3년 연속 2위 차지]

나. 정책 타이틀 ⇨ 가칭 '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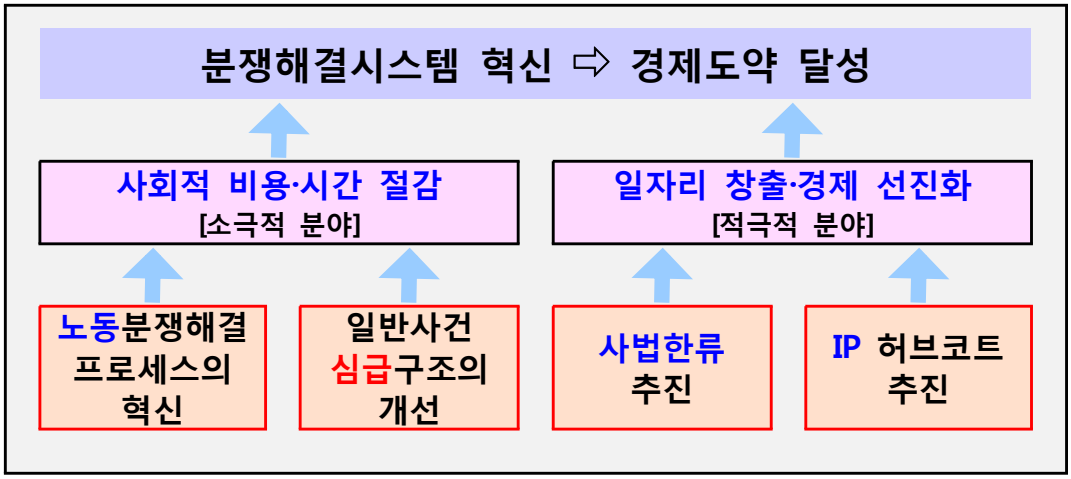

▣ **'경제도약'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선결 과제**이자 우리나라의 **고질적 폐해**인 **'사회갈등해소'를 2차 아젠다**로 제시

▣ **'반성적'인 '개혁(reformation)'**이 아닌 **'창조적'인 '혁신(innovation)'**으로 **네이밍**

● '혁신'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용된 워딩이기도 함

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

1) 추진 배경

▣ **경제도약 및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사법한류 사업 추진**

- 사법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획득 ⇨ 국가 新성장모델로 설계
- 사법한류 확산에 의한 국가 신인도 상승과 Country risk 하락 효과 도모 ⇨ 보다 유리한 조건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교류 확대 기반 조성

▣ **추진 기본 방향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양방향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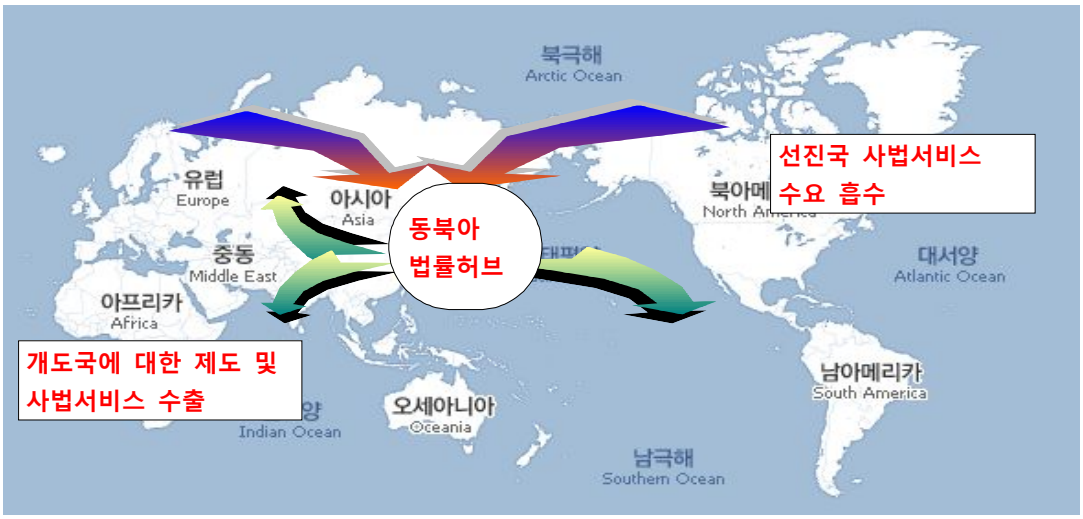

- 인바운드 [외국 ➡ 한국]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설치 ⇨ 국제 분쟁해결지로서 위치 선점
  -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富의 유출 [국내 법률시장 3조 원 vs 국내기업 해외지급 법률비용 10조 원] ⇨ 선진화·국제화를 통한 타개책 필요
- 아웃바운드 [한국 ➡ 외국] 개도국에 대한민국의 법제도 수출 ⇨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선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이미지 제고

▣ **[장기적 목표] 동북아 법률수도로 자리매김**

- 아시아 경제권의 활성화에 따른 아시아지역 법률수요 증가 ⇨ 영국·미국과 같은 확고한 선도 국가 없는 혼돈의 동북아 법률시장에서 맹주 지위 획득

2)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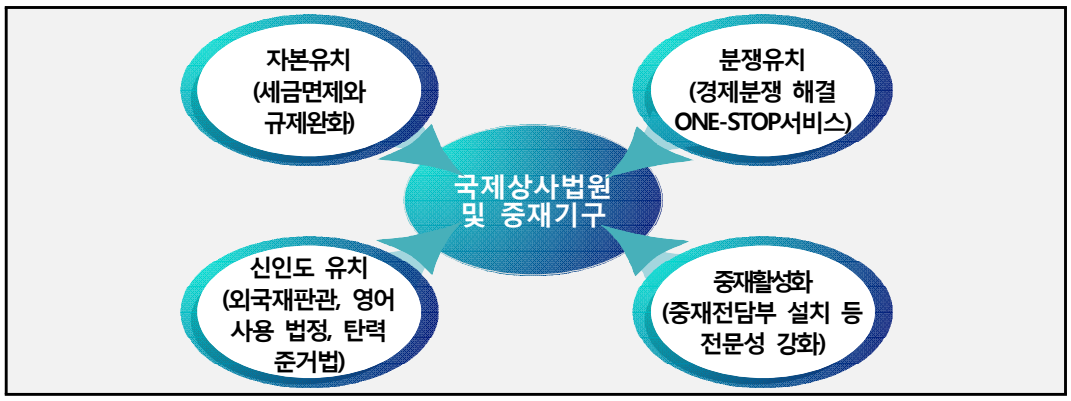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상사법원 신설

● 인천 송도 또는 제주도를 국제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

- [인천 송도] 자유경제지구와 연계 + 분쟁당사자들의 접근성 극대화
- [제주도] 일본,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 법률수요 고려

> ☑ 제주도의 對중국 입지 우월성
>
> ▶자본주의를 접한 **중국 부호, 사업가들**의 **제주도 내 투자 급속히 증가**
>
> ▶**중국 최고경영자들**의 **경영전략회의, 제2의 생활근거지, 휴식처**로서의 **선호도 상승**
>
> - 제주도의 **우수한 사회·교육·문화·환경인프라에 매료**
> - 특히, **"공안경찰이 없는 제주도에서의 자유로운 言路 개방"에 매우 만족**
>
> ※ 제주도의 **안전(Safety)·자유(Freedom)·정의(Justice)**를 보다 세련되게 **상품화**하여 **중국에 판매** ⇨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 유인**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법률시장 완전 개방** ⇦ 세금 면제, 규제 완화

● 자유경제구역 내 국제화·특화된 경제 전문법원 설립

● 외국 재판관을 법관으로 임명

●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신속·적정한 처리에 적합한 전문재판부 구성

- 상사부(Commercial Division), 파산부(Bankruptcy Division), 중재전담부(Arbitration Division), 해사부(Admiralty Division) 등

● 국제분쟁해결기구에 걸맞는 재판운영

- 공식 언어로 영어 사용, 외국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중재기구 신설

● [필요성]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창출 효과 至大

☑ **국제중재 활성화의 경제가치**

▶**중재사건 1건** 유치 ⇨ **25억 원**의 경제가치

-향후 **5년간 매년 50건**씩 유치 ⇨ **6,250억원** 수익

▶2013년 **한국기업 국제중재분쟁금액** 약 **20조원**

-중견급 이상 기업, **해외거래 분쟁의 90% 이상** 국제중재로 해결

중재 1건당 경제효과 (단위: 원)

심리기간	평균 1주일 이내
센터 이용료	1억6000만~2억
중재인 보수	1억8000만~2억4000만(3인 기준)
중재대리인(변호인) 보수	16억~20억
당사자(관계자) 지출(숙박 등)	2억4000만~3억
합계	25억

*추정치 자료: 서울국제중재센터

- 정부 주도의 법원연계형 국제중재센터 설립
- 국제중재센터와 중재전담재판부 연계
  - 소송과 중재의 결합 ⇨ 집행까지 신속·공정한 one-stop 사법서비스 제공
- 인적·물적 기반 확충
  - [인적 기반] 전문성 갖춘 **유능한 중재인 확보**
  - [물적 기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중재심리시설 구비**
- 향후 5년 이내에 **아태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중재 활성화 플랜 수립

제도적 기반	➤	중재기구조직 설계, 관련 법령
인적 기반	➤	유능한 중재인 확보
물적 기반	➤	중재심리시설 확충
국제적 기반	➤	국제적 Initiative 확보

3) 사법제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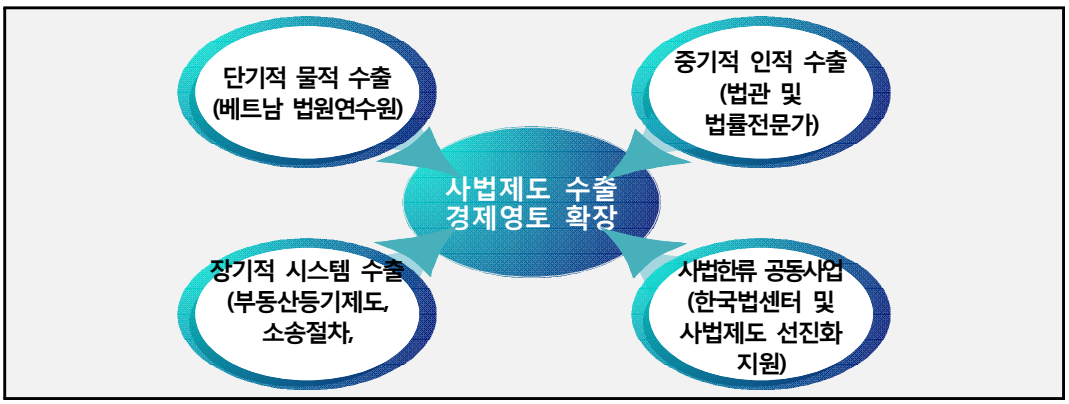

▣ **[필요성]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사법제도 보유 ⇨ 개도국에 사법제도 수출**

- 상품과 건물의 수출에서 **시스템과 제도의 수출로 패러다임 전환**
- 법치주의 및 법제도 수출을 통해서 **법률영토 확장**
- 국내 기업 해외진출의 기반 조성 ⇨ 법의 지배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 **[대상] ①아시아 개발도상국, ②남미 개발도상국, ③동유럽 기타 체제전환국**

▣ **정부 주도 사법한류 공동사업 추진**

- **BH 주도** 아래 사법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부(코이카) 등 **유관기관 참여하여 공동사업 추진** ⇨ 다수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도모

▣ **국제기구 등에서의 법제도 지원 프로그램 활용**

- **UN 등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지원 프로그램과 접목** ⇨ **사업재원 확보에 유리**

▣ **장기적·종합적 시스템 이식**

-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갖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
- **전자소송, 부동산등기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법제도와 시스템 전수**

4) 향후 추진 계획

▣ **사법부 내 기초 연구작업 착수**

- **외국 성공사례**에 대한 심층 **벤치마킹**
- 사법부 내부 **연구반 또는 TFT 구성·활동**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사항, 인적·물적 기반 소요 등 파악**

▣ **BH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법부,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이 참**

여하는 공동 추진체 구성

-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해 **BH가 사업의 전반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전국가적 혁신 아젠다**로 설정
-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장단기 액션 플랜 수립**

▣ **사업 착수**

- 사법한류에 대한 국내외 **다각도의 홍보 실시**
- 액션 플랜에 따른 **단계적 실행 계획 실천**
  - 과감한 세재혜택,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국제자유경제지구 지정**
  - 특화된 국제상사법원 등에 적용되는 회사법, 증권법, 노동법, 파산법 등 **국제기준 법률 제정**
  - 유능한 **외국 재판관, 중재전담법관 등 임용**

라. 노동 개혁의 기반이 되는 노동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혁신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혁신 필요성**

-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 노사갈등의 폐해 심각** ⇨ 막대한 **사회적 손실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약의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선진국 진입 위해 극복해야 할** 마지막 사회적 **장애요소**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연구결과)**

▶**한국의 갈등지수**, 종교분쟁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2번째로 높음**

▶**[원인]** 지역간, **노사간**, 이념간 **갈등 관리 실패**

▶갈등지수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시**

⇨ **1인당 GDP** 최대 **21% 증가**

-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효율적 사후 분쟁**

시스템 구축하여 노동 시장 전체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은 격렬한 대립양상으로 흘러 자주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간 **All or Nothing 논리**로 맞섬
- 근로형태의 다각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고용에 있어서 양성평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관계에서 분쟁이슈 더욱 **복잡·첨예·다양**해질 것임
- 현재의 **노동위원회**나 **일반 법원**에서의 **분쟁해결구조로**는 **대처**하는데 **한계**
  -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노사분쟁까지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5심제(지노위 +중노위+3심 소송)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충실하지 않은 심리, 공익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치지 않고 있음
  - **일반 법원**의 노동사건 처리에 대하여도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 有

⇨ 노동분쟁의 새로운 평화적 해결시스템 구축 긴요한 시점

▣ 혁신 개요

- 개별적 노동분쟁의 화해적 종결을 위한 분쟁처리시스템 新구축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담당 사건] **해고, 임금**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
  - [사건처리 주체] 노동심판위원회 ⇨ **직업법관 1명**과 노사관계업무경험 풍부한 **노동심판원 2명**(사용자측 1명, 노동자측 1명)으로 노동심판위원회 구성
    - (1안)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분쟁처리위원회**로 구성 ⇨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의 **개별적 근로관계분쟁**에 대한 **심판기능 흡수**
    - (2안) **법원 내 설치**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 기능 유지**하여, 노동분쟁 당사자들에게 **절차 선택권 부여**

- [신속한 분쟁해결] 1회 기일 조기 지정 + 원칙적으로 3회 기일 이내에 노동심판사건 종국 처리
- [사건처리 프로세스]
  - 일단 조정 시도 ⇨ 실패 시 심판 ⇨ 불복 시 소송으로 이행
  - 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법리적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분쟁 실상에 적합한 결론 제시
- [기대효과] 노동분쟁처리의 전문성 · 중립성 제고 + 자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 단순한 사건 종결을 넘어선 분쟁의 신속 · 근원적 해결 ⇨ 노사분쟁에 엮여 있는 유 · 무형의 사회갈등 해소 ⇨ 경제발전의 동력 확보

●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하는 방안에 비해, **단기간 내 큰 비용 투입 없이 도입** 가능

- 과거 사개위에서 추진한 노동법원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별도 법원 설립**에 대한 **부담, 노동위원회 존립과 직결되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정론** 제기된 바 있음

▣ 일본의 노동참심제 성공사례

☑ 2004년 내각 주도로 참심형 노동심판제도 도입 ⇨ 2006년 4월부터 시행

▶로스쿨 제도, 재판원 제도 등과 함께 **사법제도개혁 일환**으로 내각이 추진

▶**[개혁 배경]**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도산기업 속출하면서 노동분쟁 급증하자, **내각 후생노동성, 사법부**의 **분쟁해결기능 한계** 봉착 ⇨ **신속성 · 전문성 갖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작업 착수**

▶**[성과]** 2006. 4.부터 2009. 9.까지 동경지재 **노동심판사건 중** 약 **78%**가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종국**됨 (**조정성립율**은 **71.8%**)

▶**[평가]** 기존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변혁**이자, 일본 **사법개혁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음

마. 세계특허(IP)허브법원 추진

▣ 혁신 필요성

● 종래의 산업 발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IP와 사법서비스 결합**을

통한 국가 新성장 모델 제시

-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 내에 드는 **특허 강국**의 장점 활용
- 창조경제의 기반인 IT **기술**을 **핵심으로** 新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법인프라 구축**

● 일본의 폐쇄성, 중국의 후진성과 비교되는 **대한민국**의 **개방성, 우수성**을 **바탕**으로 **선도자로서 행보 착수**

▣ 혁신 개요

● [단기적] 특허법원에 국제부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대외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역량 강화** ⇨ 글로벌 IP소송의 **선호 법정지로 자리 잡음**

● [궁극적]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 대한민국 설치

바. 일반사건 심급구조의 개선

▣ 혁신 필요성

● 소송건수 및 상소율의 지속적 증가 ⇨ **재판기간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 **상고사건 적체로** 인해 **대법원**의 제대로 된 **법선언 및 분쟁해결기능 수행**에 **한계**점 **임박** ⇨ **최고법원**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됨

▣ 혁신 개요

● ①사실심 충실화 ⇨ 상소율 하락 ⇨ 총 재판기간 단축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심층 검토

● ②상고제도의 개선

> ☑ [원안] 상고법원 설치
>
>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상고법원**에서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강화**
>
> ▶**신속·충실한 상고사건 처리**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대안] (가칭) 상고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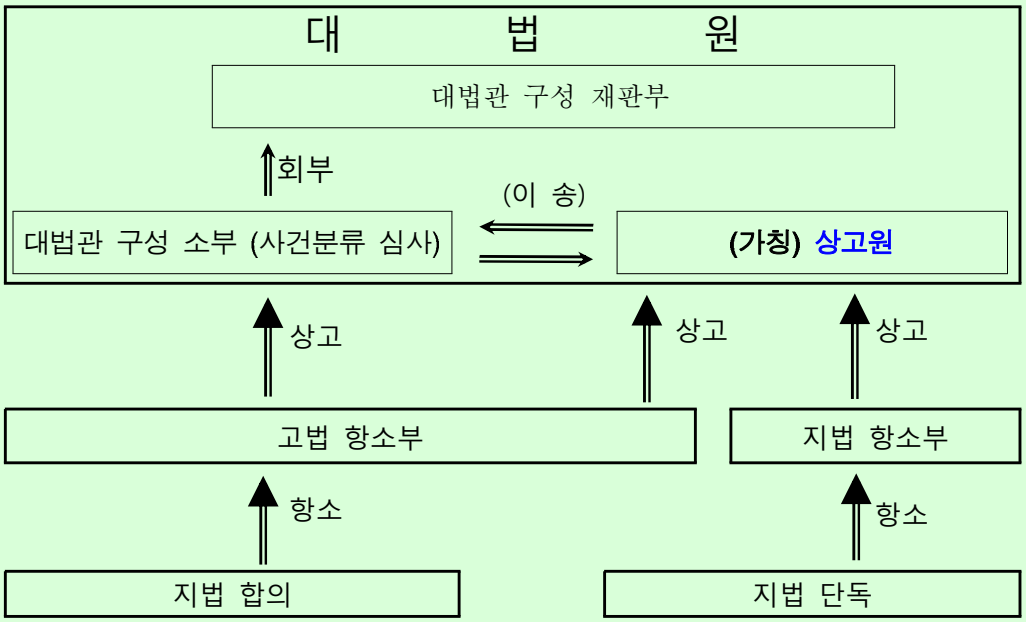

▶대법원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 조직의 일부로 '상고원'을 둠**

▶대법원 심판권을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와 **상고법관으로 구성된 부**가 **분장**함

▶신속·충실하게 상고사건 처리할 수 있다는 **상고법원안**의 **장점** 그대로 **유효**

▶**4심제 구도**로 비쳐지는 **외양 피할 수 있고**, 대법원과 상고원 사이의 긴장·갈등 상황 발생 가능성도 낮음

▶현재 **대법원 조직의 일부**를 **상고원으로 재편**하는 방식 취함으로써, 상고법원안에 비해 추가 **예산·시설 소요 우려 높지 않음**

4. 향후 사법운영에 대한 우려 불식 및 국정 적극 협조 의사 표명

가. VIP가 갖는 우려의 원인 분석

▣ **VIP 핵심 보좌진의 反법원 정서 및 反법원 성향 보고·조언의 영향으로 인한 근거 없는 불신**

- 2013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反법원 정서를 가진 보좌진이 득세함
- 그간의 **여러 법원 판결 및 사법행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과장되어 보고되었을 가능성

● '사법기능의 특성으로 인한 본질적 독립성향'을 '사법부의 독자적인 노선 및 독불장군식 운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 **VIP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사법부에 대한 낯설음과 불안감**

● VIP가 인식하고 기대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사법권에 대한 불만 및 불편함

▣ **'배신 트라우마'로 인하여 3권 분립의 한 축에 대하여도 쉽게 신뢰를 주지 아니하는 성향**

☑ VIP의 배신 트라우마에 관한 언급

▶1991. 2. 10.자 친필 일기 中

"옛 사진을 정리하며 인생무상함을 또 한번 느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당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들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이 한결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드물었다. **모두가 변하고 또 변하여, 그때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배신을 하고** 이러저러하게 변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지금의 내 주변도 몇 년 후 어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2007년 출간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中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유신 때**는 '유신만이 살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때 무슨 힘이 있어 반대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인생의 서글픔이 밀려왔다"

나. 우려의 합리적 불식

▣ **[능동적 요소] 국정운영 및 사법행정의 지향점 같음**

● CJ 임기 하반기 사법부 운영 기본방향은 VIP의 임기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지향점이 동일할 수 밖에 없음

● 1국정 철학 유사함

- 신중한 보수로서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지향하고, 청렴과 헌신을 강조하는 면 등 기본적인 국가관과 국정 철학 유사함

● 2現 VIP 임명 대법관이 점차 대법원의 다수를 점하게 됨

- 현재 3명인 現 VIP 임명 대법관이 점점 증가하여 2017. 6.에는 7명으로

과반수가 됨

▣ **[수동적 요소] 사법부 속성 및 차기 CJ 임명권**

- 1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선출된 국가원수를 상대로 도발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필요나 의지가 없음
- 2**2017. 9.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현 VIP가 행사함** ⇨ 일반론으로도 임기의 2/3를 마친 조직의 수장이 후임자 임명권자를 상대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드러낼 이유는 전혀 없음
- 3상고법원 등 **사법부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해 BH의 우호적 협조가 필수불가결함을 잘 인식**하고 있음

다. 국정 적극협조

- 공공·노동·금융·소득 부분 4대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에 협조
- 단순한 소극적·암묵적 지지가 아니라 앞에서의 세부 아이템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적극적 참여 및 지원 활동을 기초로 한 국정 협조

Ⅳ. 구체적 설득 전략

▣ **사전 고려 사항**

- 1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 특히,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BH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

☑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평가, 향후 예측 등**

▶**[긍정적 평가]** 형소법 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형사법의 증거법리에 충실한 판결**

▶**[부정적 평가]**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정치적 고려에 기한 회피성 판결**, 일부 언론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규명

▶**[향후 심리 및 결과 예측]**

- **원심**은 심리전단의 인터넷, 트위터 활동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전체를 대상으 포괄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게시글의 내용 및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를 판단**
- 대법원 판결로 **심리전단의 활동 인정범위가 달라진 범위 내**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종합적, 통계적인 상황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 ∴ 파기환송심에서의 **검찰 및 변호인의 추가입증**에 의해서 **tweet 글의 인정범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될 것

-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귀추 주목**될 것
  ⇨ 사법부에 대한 강경 일변도 입장보다는 주요 현안 관련 **접점 모색**을 위한 **유화적 태도** 보일 가능성 충분

☑ **정치인에 대한 주요 형사사건 현황**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계속 중

▶**박지원** 의원 알선수재 사건 ⇨ 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상고 제기

▶**조현룡**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박상은**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송광호**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기각

● **②민정수석**을 **우회(Bypass)한** 이병기 비서실장과 특보단 **접촉·설득 전략**의 궤도 **수정** 필요

- 성완종 전 의원 자살로 인한 제1차 사정 정국 위기, 강경 성향 보좌진에 둘러싸여 불통 이미지 강화된다는 주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에 대한 VIP의 전폭적 신뢰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유승민 원내대표 불신임 등 **민정수석의 강공 전략 조언**이 결과적으로 **성공**
  - 이미 **BH 내 권력구조의 중심축**이 비서실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이동**하였다는 평
  - 특히, **사법부 관련 정책**에 대하여는 민정수석에게 힘을 실어줘, 사실

상 의사결정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이양된 상태

- 사법부 현안 관련 공식 창구이자, 실세 보좌진인 민정수석을 제쳐 둔 채 상고법원 관련 설득·타협 전략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획기적인 설득 카드로 민정수석을 돌파하는 정공법 필요

- 여러 접촉 루트를 활용한 단계적 접촉·설득 기회 포착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VIP의 이해와 협조 구해야 할 타이밍

▣ [1단계] 이명재 민정특보와의 면담 추진

● [인적 사항] 19○○년생, ○○고, ○○대 법학과, 연수원 1기, 검찰총장

● [성향 등]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전형적인 경청형 인물, 법조 현안 관련 민정수석과 역할 분담하고 있는 지위

● [HOW] 국가 원로 입장에서 상고법원 지지 부탁

- 상고허가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환경에서, 상고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임을 이해시킴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 부각

- 대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

● [WHO] 처장님

- 지위, 연수원 기수 등 고려할 때 처장님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

▣ [2단계] 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VIP 방문 일정 활용

● [예상 일정] 8. 6.부터 8. 11.까지 사이, 오・만찬 병행 가능

- 7월 말에는 VIP 휴가 예정

● CJ께서 VIP와의 개별 면담 자리에서, 먼저 ①정부와 사법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바람, 국정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 협조 의사 등을 피력하시고, ②'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이 VIP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체가 될 것 강조

- 아울러, 심급제도의 개선 등 사법부의 최대 당면 과제에 대한 협조 강력히 요청 ⇨ 정책 추진 실패는 사법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국가의 대외적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변

- 상고법원 도입의 절박함 주지시키고, 법률안 발의 형식에 대한 해명과 함께,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 임명권 강화 방안 등 수정안 가능하다고 설득

▣ **[최종 목표]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BH의 찬성 또는 적어도 중립 입장 견인 ⇨ 상고법원 입법 성사를 위한 막강한 우군 확보 또는 긍정적 분수령 마련**